

## < 위탁 Survey 손해사정 업무 시 중요사항 >

### 1. 미수선

#### 1) 국산차 수가 기준

- M/H : 탈착, 판금, 도장 모두 28,890원
- 18년 국토부 정비수가 적정시간 당 공임 (25,383원 ~ 34,385원) 평균 단가 적용

#### 2) 외제차 수가 기준

- M/H : 탈착, 판금 : 37,141원 / 도장 : 42,855원
- 18년 국토부 정비요금 기준으로 아우다텍스 환산 지수 반영

#### 3) 공통 사항

- VAT 공제
  - 교통비 및 휴차료 등 간접손해 지급 불가
  - 차주 견적 제출 시 실무 상 통상의 미수선 비율 (제출 견적의 70~80%) 안내 지양 / 비용 협의를 하더라도 공임 및 작업 범위, M/H 등 조정하여 비용 산출 요망
  - 사제 부품 산정 시 산출 백데이터 유첨 必
- 
- AOS, 아우다텍스 등 자체 견적 산출 가능한 서베이 업체의 경우 상기 삼성화재 수가를 기준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 요망, 판금 시간 등 담당자 별 조정이 가능한 일부 수치에 대해선 통상의 수리 시간을 토대로 산정 (절대적인 것 보다는 응대 시 탄력적으로 대응)

## **2. 직접손해 – 수리비**

- 사고 조사 및 차량 입회 통하여 파손 부위 인과성 여부 확인 요망
- 손상 유형에 따른 복원, 교체 등 작업방법 판단
- 차량 입고 시 수리 기간 사전 확인하여 수리 대기기간, 부품 수급기간 등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통하여 분쟁 방지 必
- 수리업체 別 삼성화재와 계약된 수가를 적용하여 청구 사전 안내 요망 (수가 확인 불가 시 삼성화재 담당자에게 문의)

## **3. 간접손해 - 렌트비, 교통비, 영업용 차량 휴차료**

- 자동차보험과 달리 롯데렌터카 기준 배기량 기준이 아닌 피해 차량과 같은 차량 청구 가능(ex. 피해 차량 외제차인 경우 국산차 렌트가 나갈 시 국산차 요금으로 손해사정 / 피해 차량 보다 낮은 등급의 차량이 나갈 경우 나간 차량 기준으로 손해사정)
- 렌트비의 경우, 대법원 판례(할인율 30~40%) 준용함에 따라 할인율 35%를 적용하여 손해사정 진행
- 교통비의 경우, 자동차보험 약관을 준용하여 렌트비 통상의 할인율을 적용 한 30% 비용을 산정 / 피해 차량이 외제차일 시 교통비 요구 시 우선적으로 국산차 기준으로 산정하여 협의 요망 (수용 불가 시 외제차 기준 산정 가능)
- 영업용 차량 휴차료의 경우, 국토부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산정 요망 (수용 불가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산정 가능)

## 포트홀 차량사고 과실비율 가이드라인 (2021.03.31)

### □ 포트홀 사고 피해자 과실비율 : 표준 40%

- 자자체측 배상책임 인정 사고에 한함(면부책 판단은 별도)
- 피해차량 자동차보험 선처리 후 자자체배상 피구상건은 적용 제외, 유사 판결을 최대한 준용하여 처리

### □ 추가 고려 조항

- **복수의 감경조건인 경우 최대 감경율은 20% 한도**  
예시) 야간, 집단사고, 단일차선 총 30% 감경이나, 최대 20% 감경 적용하여 피해자 과실 20% 적용
- **가중조건 적용 대상은 최저 피해자 과실비율 최저 30% 이상 적용**
- **감경비율 상한을 초과한 감안 필요 건은 일반보상2파트(파트장 지정 결재자) 별도 합의 필요**

\*결재경로 : 담당자(기안) / 일반보험팀장(결재) / 이정훈팀장(결재) / 통보; 이세연부장, 김경래대리, 구자현주임, 김성혁수석

피해자 과실비율 감경조건	감경비율
○ 피해차량 다수 사고건 - 집단사고 時 (1개 사고번호 2대 이상 件)	최대 10%
○ 포트홀 식별의 어려움 ① 우천 ② 안개 ③ 적설 ④ 야간(일몰 이후) 단, 도로교통법시행규칙 上 최고속도 준수 限	1개 : 10% 2개 이상 : 20%
○ 포트홀 회피 불가사유 단일차선, 급격한 곡선구간, 선행차량 시야 차단 等 (차간거리 미확보건 제외)	최대 10%
○ 사고당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건	최대 10%
피해자 과실비율 가중조건	가중비율
○ 소형 포트홀 사고 - 깊이 10cm이하 또는 길이 20cm이하 포트홀	10%
○ 과속 사고(우천, 안개, 적설 等 감속의무 포함) 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	0 ~ 30%
○ 최저지상고 10cm 미달 차량 -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	0 ~ 30%
○ 기타 법령 및 규정 위반 사고	0 ~ 30%